

1 고위험개선 사업 전략품목 지원 확대(2종)

- 사고사망·사고중상해 예방효과 기여도, 시장 수요, 지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소권역 지원품목 선정

①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지원목적) 부적절한 임시 운반용기(구멍 가공한 드럼)의 파단으로 낙하된 중량물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금속품 운반 전용 안전적재함을 구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비)금속제 부품, 스크랩(이하, 철제부품 등) 등을 작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지게차 등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 액체, 분말 등 비정형의 원료 등을 운반하는 용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자금신청 시 최대 지원수량 결정을 위해 현재 운반·보관 중인 철제부품 사진 등 제출 필요

-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임시 운반용기(200L 드럼) 크기를 고려하여 규격(100L, 200L 용량) 한정 지원

- (지급기준)

대상 품목명	대상 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1. 최소 10개 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 2. (비)금속품 안전적재함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따른 제품일 것

○ (가격기준)

연번	형태*	규격	기준금액**	지원(한도)금액
1	사각기둥형	100L	350천원	245천원
2		200L	460천원	322천원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안전보건조치 기준

1. (적용대상) (비)금속 부품 또는 스트랩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안전적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주자재는 철판으로 하여야 하며, 철판의 두께는 3.2mm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철판은 일반압연 연강급 강대(SPHC) 이상의 기계적 강도(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접합) 주자재인 철판이 접하는 구조부의 접합은 전 용접(Full Welding)이어야 한다.
5. (모서리)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베이지 않아야 한다.
6. (도장) 안전적재함 내·외부는 용도에 맞게 도장하여야 한다.
7. (표식) 안전적재함 외면에 사업장명과 일련번호를 식별하기 쉽게 명판 부착을 하여야 한다.(예: 사업장명-01, 사업장명-02.....)
8. (적재중량) 안전적재함에 적재중량을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9.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샤클, 링, 와이어 등)는 4지점 이상 설치해야 하며, 철판에 직접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0. (안전율) 안전적재함의 안전율은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 (응력보강) 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력집중 부위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지원목적) 화물자동차 후방 및 측방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주변 작업자(신호수 포함)가 화물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지속 발생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구매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화물자동차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화물자동차* 소유 사업장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를 신규 설치하거나 고장 등에 따라 기 설치된 장치를 폐기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실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해당 서류 제출 필요)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금액)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종류	규격	기준금액	지원(한도)금액
인체감지 후방카메라 세트	4채널	1,190천원	833천원
	2채널	990천원	693천원
후방카메라 및 센서감지 세트	4채널	880천원	616천원
	2채널	680천원	476천원

○ (지급기준)

대상 품목명	대상 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물자동차 충돌예방 설비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설비	1. 직접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충돌재해예방설비 보조지급 2. 차대번호별 동일 설비 중복보조지급 불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는 4채널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기타사항) 신청서에 제출한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외 장소*에서 투자
완료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 필수

* 차량차고지 등 투자완료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넓은 장소여야 함

※ 일선기관별 관할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투자완료확인이 거절될 수 있음

2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 지원품목 추가

①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추진개요) 사업장 및 작업여건에 따라 고위험작업을 인력으로 수행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지속 노출됨에 따라 사고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높음

-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자동화설비 등)를 지원함으로써 사망·중상해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고위험작업(예시): 작업·생산품 특성상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기능해제 후 가공품을 붙잡고 풋스위치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자가 끼임(수지절단) 등의 위험에 지속 노출



○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품목확대) 생산 관련 주 설비 외 위험작업을 대체하는 보조설비 지원

대상품목명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1. 작업 위험성, 설비 지원 적정성 등이 포함된 타당성 검토서 작성 필요 2. 대상설비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관한 제품인 경우에 인증·신고품일 것 3.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에 따른 방호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 (추진개요) 미신고된 식품혼합기에 의한 끼임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를 지원품목으로 신규 추가

※ 최근 5년간 혼합기, 파쇄기 등으로 인해 29건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이 중 식품가공용 기계로 인해 근로자 6명 사망

* **재해사례:** '22.10.15. SPL(주) 소스배합 작업 중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
'22.9.5. 부산 김치공장에서 깍두기 버무리는 작업 중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
'22.5.11. 청도군 고춧가루 공장에서 작동중인 식품혼합기에 끼어 사망

- (지원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식품가공용 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단,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경우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을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한해 지원가능

* 유효기간: 1년,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 가능 [첨부1]

* 지원제외대상: ①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③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④산재보험가입 업종 건설업 중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⑤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⑥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⑦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등

- (지원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파쇄기·절단기·혼합기)를 대상으로 함(단, 제면기는 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출)

- 자금신청 시 투자계획 확인* 대체를 위한 자료[제출2] 제출 필요

*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첨부

- 교체*(기존 용량**의 150% 이내)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폐기 설비 증빙[제출3]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결정 취소)

* 교차지원의 경우 지원불가 (예: 파쇄기를 절단기로 교체하는 경우)

** 내부용량(L, kg) 또는 모터용량(kw) 등, 사양 중 정량화 가능한 수치 적용

<폐기 설비 증빙 제출방법>

사업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진행 및 폐기사진을 받아 공단에 제출**

※ 반드시 폐기사진 증빙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사전에 폐기사진 요구

❶ 장비의 **커버 및 로터*** 구동축을 분해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파손시킬 것

* 로터 :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

❷ 인입배선은 **최단길이로 절단** 할 것

○ (지급기준)

대상품목명	대상설비명	보조금지급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식품가공용 기계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기)	1. 미신고된 식품가공용 기계를, 자율안전확인 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 2. 기존용량의 150% 이내의 설비로 지원 3. 폐기설비 확인 필요

○ (가격기준) 실거래 세금계산서 5건, 원가계산계산서 등 제출

○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식품가공용 기계의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별지 제3호 서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① [중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②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 발급사실 및 발급주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원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확인사항

①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 지원불가)

② 유효기간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제출1]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예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명

형식(규격)	용량(등급)
--------	--------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사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제출2] 투자계획 확인 대체자료 예시



기기 전면사진 (교체 전)

명칭	식품혼합기		
내부용량	20L	모터용량	3KW
모델	ABC-D	고유번호	A-01
제작일	20XX.01.01.		
OO식품혼합기(주)			

명판사진 (내부용량, 모터용량 등이 보이도록 촬영)

■ [제출3] 폐기설비 증빙 예시 ※ 폐기사진 증빙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사전에 폐기사진 요구



장비커버 제거 및 인입배선 절단 사진



구동축 분해 및 파손 사진

①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취출로봇) 지원형태 다양화

○ (추진개요) 사출과정과 금형구조가 복잡해지고 취출 이후 사출성형과 연계하는 과정(게이트 커팅, 적재·이송 등)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설비(취출로봇)의 형태가 다양화됨

- 사출성형기 취출 시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기 지원 중인 설비(취출로봇)*의 세부분류를 확대하여 사업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지원하고자 함

○ (품목확대)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취출로봇)의 세부분류 확대

- 사업장에서 고기능·사양 설비를 원하는 경우 보조금이 과잉 지원될 수 있음에 따라, 설치대상 사출기 형체력을 적용하여 자동 취출로봇(주행) 기준으로 보조지원기준금액 산정

세분류명	판단기준	규격	보조지원기준금액(원)
(추가) 자동취출 다관절로봇	적용 사출기 형체력	~81ton미만	6,700,000
		81ton이상~151ton미만	7,800,000
		151ton이상~251ton미만	12,000,000
		251ton이상~351ton미만	15,000,000
		351ton이상~501ton미만	15,500,000
		501ton이상~651ton미만	20,500,000
		651ton이상~851ton미만	27,000,000
		851ton이상~1,301ton미만	27,700,000
		1,301ton이상~2,001ton미만	29,000,000
		2,001ton이상~2,501ton미만	32,000,000
		2,501ton이상~3,001ton미만	32,000,000
		3,001ton이상~4,001ton미만	32,000,000

* (前) 자동취출로봇(주행)·(회전) → (開) 자동취출로봇(주행)·(회전), 자동취출다관절로봇

② 고소작업대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 (추진개요) 공사(설치)현장, 건축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중 사다리 작업 등을 안전하게 대체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사용 증가
 - 지원한도(1천만원)에 따라 자체 부담금액* 증가로 보조신청을 포기하거나, 안전한 고소작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수량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기준변경)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지급” 기준을 폐지하고 표준가격테이블에 따른 기준금액의 70% 지원

대상 품목명	대상 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일 것 2. 지원대수 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지급(폐지)